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2021. 10. 22

자 재 처
자재총괄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2. 적용범위</p> <p>우리 회사에서 조달하는 기자재의 공급 유자격 등록 및 등록된 공급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우리 회사의 계약관련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2. 적용범위</p> <p>우리 회사에서 조달하는 기자재 <u>중 신뢰품목</u>의 공급 유자격 등록 및 등록된 공급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우리 회사의 계약관련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적용범위 명확화 																		
<p>3. 책임사항</p> <p>3.01. 주관부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책 임</th> <th style="width: 75%;">책 임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재처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업무주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자재총괄부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품목의 지정 및 취소 · 등록 안내공고 ·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와 기술 및 품질분야 심사 의뢰 ·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SRM신청서류로 심사) · 현장심사팀 조정 (기술분야 단독 또는 기술+품질분야 합동) · 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결정 ·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에 유자격자 관련자료 입력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등록된 공급자의 관리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td> </tr> </tbody> </table>	구분	책 임	책 임 사 항		자재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업무주관	자재총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품목의 지정 및 취소 · 등록 안내공고 ·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와 기술 및 품질분야 심사 의뢰 ·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SRM신청서류로 심사) · 현장심사팀 조정 (기술분야 단독 또는 기술+품질분야 합동) · 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결정 ·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에 유자격자 관련자료 입력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등록된 공급자의 관리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p>3. 책임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책 임</th> <th style="width: 75%;">책 임 사 항</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u>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u>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관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해당 부서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뢰</u>품목의 지정, 취소 및 <u>SRM 공지</u> · 등록신청서류 접수/검토,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 현장심사(기술/품질) 의뢰 · <u>국외사업장</u> 현장심사 계획수립 및 관리 · 현장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등록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u>등록된 유자격자의 관리 및 제재</u>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td> </tr> </tbody> </table>	구 분	책 임	책 임 사 항		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u>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u> 	주관부서	해당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뢰</u>품목의 지정, 취소 및 <u>SRM 공지</u> · 등록신청서류 접수/검토,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 현장심사(기술/품질) 의뢰 · <u>국외사업장</u> 현장심사 계획수립 및 관리 · 현장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등록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u>등록된 유자격자의 관리 및 제재</u>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 책임사항 추가 ▪ 문구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명 단일화 - 등록대상품목 → 신뢰품목 - 일반경영분야 → 경영분야 ▪ 주관부서 책임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격자 제재
구분	책 임	책 임 사 항																		
	자재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업무주관	자재총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품목의 지정 및 취소 · 등록 안내공고 · 등록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와 기술 및 품질분야 심사 의뢰 ·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SRM신청서류로 심사) · 현장심사팀 조정 (기술분야 단독 또는 기술+품질분야 합동) · 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결정 ·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에 유자격자 관련자료 입력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등록된 공급자의 관리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구 분	책 임	책 임 사 항																		
	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u> · <u>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u> 																		
주관부서	해당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뢰</u>품목의 지정, 취소 및 <u>SRM 공지</u> · 등록신청서류 접수/검토, 등록신청자의 <u>일반경영분야</u> 심사 · 현장심사(기술/품질) 의뢰 · <u>국외사업장</u> 현장심사 계획수립 및 관리 · 현장심사결과 종합 및 유자격자 등록 · 등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 <u>등록된 유자격자의 관리 및 제재</u> · 자격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현행			개정		개정사유
3.02. 관련부서					
구분	책임	책임 사항	관련부서	처장 • 구매규격 작성 및 <u>신뢰</u> 품목 지정 요청 승인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 해당부서장 • 구매규격 작성 및 <u>신뢰</u> 품목 지정 요청 • 협력업체 상별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및 제출 • 등록신청업체의 기술 및 품질분야 심사 • <u>현장심사 결과</u> 주관부서 통보 • 기술 및 품질분야 자격 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 성능확인시험 <u>대상 선정 및 관리</u> • <u>유자격자 현장점검 시행 및 결과 통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 현장심사 결과 ▪ 관련부서 책임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시행 및 통보
보고	기술품질처장 ICT기획처장 배전계획처장 계통계획처장 송변전건설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규격 작성 및 등록대상품목 지정 요청 승인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서 명시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 			
통보	자재처 기술품질처 ICT기획처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규격 작성 및 등록대상품목 지정 요청 • 협력업체 상별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및 제출 • 등록신청업체의 기술 및 품질분야 심사 			
협조	스마트미터링처 신재생사업처 계통계획처 송변전건설처 송변전운영처 신송전사업처 해당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주관부서 통보 • 기술 및 품질분야 자격 심사기록 유지 및 보존 • 성능확인시험 요청 			
홍보					
4. 용어의 정의			4. 용어의 정의		
4.01 ~ 4.06 (생략)			4.01 ~ 4.06 (현행과 동일)		
4.07 “사전등록품목”이라 함은 이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신뢰품목을 말한다.			4.07 (<u>삭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용어 삭제 ▪ 문항 수정 ▪ 용어 추가
4.08 (생략)			4.07 (현행과 동일)		
< 신설 >			4.08 “일반품목”이라 함은 <u>우리공사가 조달하는 일반적인 전력기자재로써 신뢰품목 이외의 품목을 말한다.</u>		
4.09 ~ 4.13 (생략)			4.09 ~ 4.13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추가
< 신설 >			4.14 “제품인증시험”이라 함은 <u>기자재의 품질검증을 위하여 KAS (한국제품인정기구) 인증기관을 통해 Type 3(형식시험 및 공장심사) 유형으로 제품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u>		
4.14 ~ 4.16 (생략)			4.15 ~ 4.17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정 ▪ 용어 정비 및 관련부서 추가
4.17 “관련부서”라 함은 이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의 수요부서, <u>운영부서</u> 및 품질관리부서를 말한다.			4.18 “관련부서”라 함은 이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의 <u>심사부서</u> , 수요부서, <u>운영부서</u> 및 품질관리부서 및 <u>특수사업소 분석부서</u> 를 말한다.		
4.18 (생략)			4.19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정 ▪ 수요부서 정의 수정
4.19 “수요부서”라 함은 품목의 지정·변경·취소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4.20 “수요부서”라 함은 품목의 지정·변경·취소를 요청하며 <u>설비의 운영 및 기준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u>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5. 관련근거</p> <p>5.01 ~ 5.07 (생략)</p> <p>5.08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HO-배전-기준-0022)</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5. 관련근거</p> <p>5.01 ~ 5.07 (현행과 동일)</p> <p>5.08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HO-배전-기준-0067)</p> <p>5.09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HO-배전-기준-0026)</p> <p>5.10 송변전 기자재공급자 품질평가 기준(H1-품질-기준-0001)</p> <p>5.11 ICT 기자재공급자 품질등급평가 기준(HI-ICT-기준-0001)</p> <p>5.12 협력업체 상벌위원회 운영기준(HO-자재-기준-0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 (지침번호 수정) ▪ 관련근거 추가
<p>7. 신뢰품목의 운용</p> <p>7.01 신뢰품목의 지정 또는 취소는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u>주관 부서에서</u> 결정한다.</p> <p>7.02 ~ 7.03 (생략)</p> <p>7.04 <u>신뢰품목의 지정 단위는 규격별로 지정하며, 동일 구매규격에 2개 이상의 규격이 명시된 경우에는 인정시험 시의 대표규격을 정하여 품명별로 지정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7.06 ~ 7.08 (생략)</p>	<p>7. 신뢰품목의 운용</p> <p>7.01 신뢰품목의 지정 또는 취소는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신뢰품목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7.02 ~ 7.03 (현행과 동일)</p> <p>7.04 신뢰품목의 지정 단위는 품목번호별로 지정한다. 단, 동일 구매 규격에 2개 이상의 품목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인정시험 항목이 다른 경우 별도로 신뢰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p> <p>7.05 동일 구매규격에 인정시험시의 대표규격이 명시된 경우 동일종류의 기자재는 인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7.06 ~ 7.08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품목 운영 심의위원회 신설 ▪ 신뢰품목 지정단위 명확화 ▪ 인정시험 면제기준 명확화
<p>9. 신청자격</p> <p>9.01 ~ 9.02 (생략)</p> <p>9.03 판매업체는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9.02항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와 물품 공급 및 A/S 제공에 관한 약정서와 제조업체가 서명한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체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하나의 제조업체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업체 및 제조업체는 신청품목의 유자격자가 아니어야 한다.</p> <p>9.04 ~ 9.06 (생략)</p>	<p>9. 신청자격</p> <p>9.01 ~ 9.02 (현행과 동일)</p> <p>9.03 판매업체는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9.02항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급 및 A/S 제공에 관한 약정서와 제조업체가 서명한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체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하나의 제조업체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업체 및 제조업체는 신청품목의 유자격자가 아니어야 한다.</p> <p>9.04 ~ 9.06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기준 문구 명확화
<p>10. 신청서류</p> <p>10.01 (생략)</p> <p>10.02 등록을 희망하는 공급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을 통하여 등록신청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증빙</p>	<p>10. 신청서류</p> <p>10.01 (현행과 동일)</p> <p>10.02 등록을 희망하는 공급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을 통하여 등록신청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증빙서류,</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서류, 제작규격 등 부속서류 및 필수 제조설비와 필수 검수 시험설비 내역(일련번호 등)을 <u>On-Line</u> 전송하여야 한다.</p> <p>10.03 ~ 10.0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제작규격 등 부속서류 및 필수 제조설비와 필수 검수시험설비 내역(일련번호 등)을 <u>On-Line</u> 제출하여야 한다.</p> <p>10.03 ~ 10.06 (현행과 동일)</p> <p>10.07 <u>주관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필수 제조설비와 필수 검수설비 내역을 확인하고 설비 확인용 위조방지 스티커를 배부한다. 신청자는 배부 받은 스티커를 설비에 부착한 사진을 SRM으로 제출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 문구 삭제 ▪ 필수설비 관리 강화
<p>11. 등록심사</p> <p>11.01 (생략)</p> <p>11.02 심사 분야별 업무주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1.02.1 경영분야 서류검토 및 심사 : 주관부서</p> <p>11.02.2 기술분야 서류검토 및 심사 : <u>수요부서 또는 관련부서</u></p> <p>11.02.3 품질분야 서류검토 및 심사 : 품질관리부서</p> <p>11.03 우리회사는 등록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추가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제작규격 승인 후 기술적 보완사항 발생 시 제작규격의 보완요구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고 후 등록 심사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p>	<p>11. 등록심사</p> <p>11.01 (현행과 동일)</p> <p>11.02 심사 분야별 업무주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1.02.1 경영분야 서류검토 및 심사 : 주관부서</p> <p>11.02.2 기술분야 서류검토 및 <u>현장심사 : 심사부서 또는 관련부서</u></p> <p>11.02.3 품질분야 서류검토 및 <u>현장심사</u> : 품질관리부서</p> <p>11.03 우리회사는 등록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추가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제작규격 승인 후 기술적 보완사항 발생 시 제작규격의 보완요구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u>한다. 우리회사는 신청자가</u>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고 후 등록 심사업무를 종결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분야 구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 서류심사 - 기술, 품질 : 서류, 현장심사 ▪ 문구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종결 시행주체 명확화
<p>12. 신청서류 심사</p> <p>12.01 ~ 12.02 (생략)</p> <p>12.03 신청자가 신청품목의 최신 구매규격에 적합하고, 시험조건이 동등 이상인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기술분야 심사부서에서 검토 후 인정시험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거나 검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유자격 등록과정에서 일부 인정시험 항목에 대하여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 및 <u>기술부서</u>에서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 여부 검토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p> <p>12.04 (생략)</p>	<p>12. 신청서류 심사</p> <p>12.01 ~ 12.02 (현행과 동일)</p> <p>12.03 신청자가 신청품목의 최신 구매규격에 적합하고, 시험조건이 동등 이상인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기술분야 심사부서에서 검토 후 인정시험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u>면제</u>하거나 검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유자격 등록과정에서 일부 인정시험 항목에 대하여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 및 <u>기술분야 심사부서</u>에서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 여부 검토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p> <p>12.04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면제 ▪ 문구 명확화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3. 현장심사</p> <p>13.01 우리회사는 신청자의 신청품목에 대한 설계, 제조능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유효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1)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현장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공장에 한하여 현장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3.01.1 (생략)</p> <p>13.01.2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에 의해 현장심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p> <p>13.01.3 신청품목과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이 동등 이상인 유사품목을 신청일을 기준하여 <u>3년</u> 이내에 현장심사한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p> <p>13.01.4 품질분야 현장심사는 신청품목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현장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단, 등록정지 제재 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품질평가 하위품목(배전 Limited 및 Poor, 송변전 입찰제한, ICT C등급)이 있는 경우 등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그룹은 유자격자 현장품질심사를 시행한다. 이때 자재그룹은 [별표 2] 현장심사 기준의 1.3 기술분야 평가기준의 자재그룹으로 한다.</p>	<p>13. 현장심사</p> <p>13.01 우리회사는 신청자의 신청품목에 대한 설계, 제조능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유효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1), <u>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u>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현장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공장에 한하여 현장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면제</u>할 수 있다. 단, 등록정지 제재 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품질평가 하위품목(배전/송변전 C,D등급, ICT C등급)이 있는 경우 등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그룹은 유자격자 현장심사를 시행한다. 이때 자재그룹은 [별표 2] 현장심사 기준의 1.3 기술분야 평가기준의 자재그룹으로 한다.</p> <p>13.01.1 (현행과 동일)</p> <p>13.01.2 배전, <u>송변전</u>기자재 품질등급제에 의해 현장심사 <u>면제</u>가 가능한 경우</p> <p>13.01.3 신청품목과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이 동등 이상인 유사품목을 신청일을 기준하여 <u>2년</u> 이내에 현장심사한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p> <p>13.01.4 품질분야 현장심사는 신청품목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현장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단, 등록정지 제재 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품질평가 하위품목(배전/송변전 Limited 및 Poor, 송변전 입찰제한, ICT C등급)이 있는 경우 등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그룹은 유자격자 현장품질심사를 시행한다. 이때 자재그룹은 [별표 2] 현장심사 기준의 1.3 기술분야 평가기준의 자재그룹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심사 면제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안전 인증 추가 *경과조치: '23.01.01 신규 및 갱신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 문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면제 ▪ 배전/송변전 품질평가등급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llent, Good, Normal, Limited, Poor → S, A, B, C, D ▪ 현장심사 면제대상 확대 ▪ 유사품목 면제기준 기준 변경 : 3년 → 2년 ▪ 13.01 항목에 적용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3.02 ~ 13.05 (생략)</p> <p>13.06 국외사업장의 현장심사 기준은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르며, 국외 현장심사 기간, 절차, 인원 등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단, 국외의 경우 경영분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p> <p>13.07 ~ 13.11 (생략)</p> <p>13.1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p> <p>13.13 ~ 13.1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13.02 ~ 13.05 (현행과 동일)</p> <p>13.06 국외사업장의 현장심사 기준은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별표 2]에 따르며, 국외 현장심사 기간, 절차, 인원 등은 필요한 경우 <u>신청자와</u> 상호 협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단, 국외의 경우 경영분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2] 3. 국외 경영분야”에 따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p> <p>13.07 ~ 13.11 (현행과 동일)</p> <p>13.1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단, 동일 기업 소속 복수의 공장에서 해당 품목 생산을 위한 제작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필수 제조·검수설비, 인원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p> <p>13.13 ~ 13.15 (현행과 동일)</p> <p>13.16 필수 제조설비에는 <u>우리회사에서 배부한 설비 확인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가 훼손되었거나 설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주관부서로부터 스티커를 재발급 받아 설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필요 시 심사부서는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설비에 직접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u></p> <p>13.17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심사가 불가하여 유자격 등록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청자의 요청 시 심사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비대면 현장심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절차는 [별표2] ‘4. 비대면 현장심사’에 따른다.</p> <p>13.17.1 비대면 현장심사는 2단계로 나뉘며 피시험품 제작단계 전 화상플랫폼 등을 이용한 ‘예비심사’와 현장심사 불가요인 해소 후 제작공장 방문하여 시행하는 ‘최종심사’로 구분된다.</p> <p>13.17.2 비대면 현장심사 업무는 ‘예비심사’, 피시험품 제작/인정시험, ‘최종심사’ 순서로 진행된다.</p> <p>13.17.3 ‘최종심사’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해당 피시험품의 인정시험성적서는 불인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협의주체 명확화 ▪ 국외 경영분야 현장심사 기준 명시 ▪ 기술분야 현장심사 기준 명확화 ▪ 필수 제조설비 관리 강화 ▪ 비대면 현장심사 도입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4.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p> <p>14.01 신청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정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피시험품에 대하여 <u>신청자별로 자체적으로 보유중인</u> 제작공정도와 등록된 공장에서 촬영한 제작사진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4.02 제작사진은 제작공정도상 반제품 이상 상태에서 제작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으로 위치정보 및 촬영일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u>제조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u>(단, 제작공정중 일부가 외주제작인 경우는 제작공정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p> <p>14.03 최종 완성된 피시험품에는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u>제조번호</u>가 입력된 피시험품 확인 위조방지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피시험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14.04 ~ 14.07 (생략)</p> <p>14.08 가격조사 담당부서는 우리 회사 구매실적이 없는 신뢰품목의 경우 피시험품에 대한 품질·안전 비용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가 협조 요청을 승낙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이 인정시험성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에 등록한 이후 3개월 내에 [부록 6] 양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가격조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p>	<p>14.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p> <p>14.01 신청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정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피시험품에 대하여 <u>표준양식[부록 9]에 맞춰 작성된</u> 제작공정도(<u>자체 제조공정과 외주공정을 구분하여 명시</u>)와 등록된 공장에서 촬영한 제작사진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4.02 제작사진은 제작공정도상 반제품 이상 상태에서 제작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으로 위치정보 및 촬영일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u>최종완성된 시험품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관리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u>(단, 제작공정중 일부가 외주제작인 경우는 제작공정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p> <p>14.03 최종 완성된 피시험품에는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u>관리번호</u>가 입력된 피시험품 확인 위조방지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피시험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14.04 ~ 14.07 (현행과 동일)</p> <p>14.08 가격조사 담당부서는 우리 회사 구매실적이 없는 신뢰품목의 경우 피시험품에 대한 품질·안전 비용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가 협조 요청을 승낙한 경우 <u>등록 신청자는</u> 공인시험기관이 인정시험성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에 등록한 이후 3개월 내에 [부록 6] 양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가격조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공정도 표준양식 추가 ▪ 제작공정도에 자체/외주 공정 구분 ▪ 문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부착대상 명확화 ▪ 공정도 표기내용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2 → 14.01 ▪ 인정시험성적서 제출 주체 명시
<p>15. 인정시험 및 시험사용</p> <p>15.01 인정시험의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5.01.1 ~ 15.01.7 (생략)</p> <p>15.01.8 “불합격”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인정시험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항목은 <u>기술부서</u>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5.01.9 ~ 15.01.11 (생략)</p> <p>15.02 ~ 15.03 (생략)</p>	<p>15. 인정시험 및 시험사용</p> <p>15.01 인정시험의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5.01.1 ~ 15.01.7 (현행과 동일)</p> <p>15.01.8 “불합격”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인정시험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항목은 <u>기술분야 심사부서</u>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5.01.9 ~ 15.01.11 (현행과 동일)</p> <p>15.02 ~ 15.03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명확화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7. 유자격 유효기간</p> <p>17.01 이 지침에 의하여 신뢰품목에 등록된 공급자의 유자격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동일품목내 다수의 규격이 있을 경우의 유자격기간은 품목내 규격 중 자격 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짜로 한다.</p> <p>17.02 (생략)</p>	<p>17. 유자격 유효기간</p> <p>17.01 이 지침에 의하여 신뢰품목에 등록된 공급자의 유자격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동일 <u>자재그룹</u>내 다수의 <u>품목</u>이 있을 경우의 유자격기간은 <u>자재그룹내 품목</u> 중 자격 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짜로 <u>할 수 있다</u>.</p> <p>17.02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그룹별 일괄갱신으로 업체편의 제공 - 품목 → 자재그룹 - 규격 → 품목
<p>18. 등록갱신</p> <p>18.01 유자격 유효기간의 등록갱신 신청은 만료 예정일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18.02 유자격 유효기간 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회사의 사정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갱신 완료시까지 공급유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관련부서로 통보한다.</p> <p>18.03 ~ 18.07 (생략)</p>	<p>18. 등록갱신</p> <p>18.01 <u>유자격 등록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18.02 <u>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갱신업무 처리기간) 이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만료일까지 등록 완료가 안되었을 경우 유자격 유효기간을 갱신완료 시까지 연장한다</u>.</p> <p>18.03 ~ 18.07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연장관련 신청 시점 명확화 ▪ 문구수정 - 만료 예정일 → 만료일
<p>19. 등록사항의 변경 및 승인</p> <p>19.01 유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우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9.01.1 공장이전 및 추가</p> <p>19.01.2 (생략)</p> <p>19.01.3 제작규격(전력량계 소프트웨어 포함)의 변경(단,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u>주요부품</u>의 변경·호환사용은 거절될 수 있다.)</p> <p>19.01.4 ~ 19.01.5 (생략)</p> <p>19.02 ~ 19.03 (생략)</p> <p>19.04 유자격자가 <u>주요부품</u>을 모두 국내·외 타사제품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완제품 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술분야 심사부서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p> <p>19.05 수요부서는 구매규격이 개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제작규격의 변경여부, 재인정시험 항목 등의 조치사항과 유</p>	<p>19. 등록사항의 변경 및 승인</p> <p>19.01 유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우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9.01.1 공장이전 및 <u>변경</u></p> <p>19.01.2 (현행과 동일)</p> <p>19.01.3 제작규격(전력량계 소프트웨어 포함)의 변경(단,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u>핵심</u>부품의 변경·호환사용은 거절될 수 있다.)</p> <p>19.01.4 ~ 19.01.5 (현행과 동일)</p> <p>19.02 ~ 19.03 (현행과 동일)</p> <p>19.04 유자격자가 <u>핵심</u>부품을 모두 국내·외 타사제품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완제품 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술분야 심사부서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p> <p>19.05 수요부서는 구매규격이 개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제작규격의 변경여부, 재인정시험 항목 등의 조치사항과 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공장 추가 → 변경 ▪ 문구 변경 - 주요부품 → 핵심부품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예기간(유예기간 이후 자격정지) 등을 유자격자에게 안내한다.</p> <p>19.05.1 (생략)</p> <p>19.05.2 구매규격 개정사유,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일자</p> <p>19.05.3 ~ 19.05.4 (생략)</p>	<p>기간(유예기간 이후 자격정지) 등을 유자격자에게 안내한다.</p> <p>19.05.1 (현행과 동일)</p> <p>19.05.2 구매규격 개정사유,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일자 (개정 전 구매규격 적용 유예기간 명시)</p> <p>19.05.3 ~ 19.05.4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추가 - 구매규격 개정으로 인한 계약업무 혼선 방지
<p>21. 성능확인시험</p> <p>21.01 (생략)</p> <p>21.02 성능확인시험에 필요한 피시험품은 현장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자재 또는 우리회사 물류센터나 사업소에 보관중인 신제품 중에서 발취하며 피시험품이 없는 경우 성능확인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유자격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시험품을 제작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유자격자가 피시험품 확인을 연장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20.01.3호의 경우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에 따른다.</p> <p>21.03 (생략)</p>	<p>21. 성능확인시험</p> <p>21.01 (현행과 동일)</p> <p>21.02 성능확인시험에 필요한 피시험품은 현장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자재 또는 우리회사 물류센터나 사업소에 보관중인 신제품에서 발취하며 피시험품이 없는 경우 성능확인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유자격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시험품을 제작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유자격자가 피시험품 확인을 연장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20.01.3호의 경우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에 따른다.</p> <p>21.03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시험품 확인 연장기한 명확화
<p>22. 현장점검</p> <p>22.01.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22.01.1 ~ 22.01.5 (생략)</p> <p>22.01.6 기타 유자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2. 현장점검</p> <p>22.01.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22.01.1 ~ 22.01.5 (현행과 동일)</p> <p>22.01.6 공급자 예방진단 등 유자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대상 추가
<p>23. 제재 일반사항</p> <p>23.01 ~ 23.04 (생략)</p> <p>23.05 제재 해당항목이 중복될 경우 제재정도가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p> <p>23.06 관련부서는 제재요청 사유를 발견한 경우 <u>5일</u> 이내에 <u>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u>하여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재</p>	<p>23. 제재 일반사항</p> <p>23.01 ~ 23.04 (현행과 동일)</p> <p>23.05 동일 제재 시점에 제재 해당항목이 중복될 경우 제재정도가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제재기간 중 기존 제재시점 이후에 추가 제재사유 발생 시 추가 제재기간은 기존 제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시작한다.</p> <p>23.06 관련부서는 제재요청 사유를 발견한 경우 <u>5일(영업일 기준)</u> 이내에 <u>다음 각 호의 사항</u>을 구체적으로 <u>기재</u>하여 <u>주관부서로</u> 제재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기간 중 추가 제재 발생 시 적용기준 명시 ▪ 문구 수정 및 제재요청 대상 명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사유를 확인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한 일자를 기준으로 <u>5일</u>이내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제재요청 사유발생시 해당공급자에게 제재사유가 발생했음을 즉시 통보하고, <u>2주일</u> 기간을 주어 공급자의 소명을 요청하여야 한다.</p> <p>23.07 ~ 23.09 (생략)</p>	<p>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재사유를 확인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한 일자를 기준으로 <u>5일(영업일 기준)</u> 이내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제재요청 사유 발생시 해당공급자에게 제재사유가 발생했음을 즉시 통보하고, <u>14일</u> 기간을 주어 공급자의 소명을 요청하여야 한다.</p> <p>23.07 ~ 23.09 (현행과 동일)</p>	
<p>24. 제재 항목 및 기간</p> <p>24.01 공급자등록 관련</p> <p>24.01.1 아래 항목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u>1회</u> 시정권고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p> <p>가)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 등록정지 3개월</p> <p>나) 법인의 분리·합병, 양도·양수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p> <p>다) 제작사양(전력량계 소프트웨어 포함), 설계도면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p> <p>24.02 기자재 품질 및 성능관련</p> <p>24.02.1 ~ 24.02.2 (생략)</p> <p>24.02.3 성능확인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 또는 성능확인시험을 미시행한 경우 가) ~ 다) (생략)</p> <p>라)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에 의거하여 성능확인시험을 받는 경우, 24.02.3호 가) ~ 다)목 이외의 제재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을 따른다.</p> <p>24.03 (생략)</p>	<p>24. 제재 항목 및 기간</p> <p>24.01 공급자등록 관련</p> <p>24.01.1 아래 항목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u>제재사항 발생 통보</u>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p> <p>가)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 등록정지 3개월</p> <p>나) 법인의 분리·합병, 양도·양수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p> <p>다) 제작<u>규격</u>(전력량계 소프트웨어 포함), 설계도면의 변경 : 등록정지 6개월</p> <p>24.02 기자재 품질 및 성능관련</p> <p>24.02.1 ~ 24.02.2 (생략)</p> <p>24.02.3 성능확인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 또는 성능확인시험을 미시행한 경우 가) ~ 다) (생략)</p> <p>라)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에 의거하여 성능확인시험 <u>또는 제품인증시험</u>을 받는 경우, 24.02.3호 가) ~ 다)목 이외의 제재는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을 따른다.</p> <p>24.03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취소 발생시점 명확화 ▪ 문구 수정 - 19.01.3호 내용과 통일 ▪ 제품인증시험에 따른 제재 추가
<p>부칙(1997.4.1)</p> <p>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7. 4. 1부터 시행한다.</p> <p>(중략)</p> <p>(신설)</p>	<p>부칙(1997.4.1)</p> <p>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7. 4. 1부터 시행한다.</p> <p>(중략)</p> <p><u>부칙(2021. 10. 22)</u></p> <p>① (시행일) 이 지침은 <u>2021. 10. 22.부터</u>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p> <p><u>1. 13.01항 현장심사 면제관련 환경 및 안전 인증 추가에 관한 사항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조치 내용 명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2023. 01. 01 이후 신규 및 갱신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한다.</p> <p>2. 13.01항, 13.01.2항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송변전기자재 품질평가 등급 관한 사항은 「2022년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결과 알림 이후부터 적용한다.</p>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1. 제조업체의 ‘신뢰품목’ 등록신청 서류</p> <table border="1" data-bbox="175 571 1133 935"> <thead> <tr> <th>번호</th> <th>제출 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td> <td rowspan="2">해당하는 경우만 제출</td> </tr> <tr> <td>2</td> <td>KS, 형식승인서, ISO9001</td> </tr> <tr> <td>3</td> <td>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td> <td rowspan="2">필수서류(부록 참조)</td> </tr> <tr> <td>4</td> <td>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td> </tr> </tbody> </table>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KS, 형식승인서, ISO9001	3	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	필수서류(부록 참조)	4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1. 제조업체의 ‘신뢰품목’ 등록신청 서류</p> <table border="1" data-bbox="1254 571 2211 958"> <thead> <tr> <th>번호</th> <th>제출 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td> <td rowspan="3">해당하는 경우만 제출</td> </tr> <tr> <td>2</td> <td>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ISO45001</td> </tr> <tr> <td>3</td> <td>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td> </tr> <tr> <td>4</td> <td>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부록 참조)</td> <td rowspan="3">필수서류</td> </tr> <tr> <td>5</td> <td>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부록 참조)</td> </tr> <tr> <td>6</td> <td>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td> </tr> </tbody> </table>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 ISO45001	3	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	4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부록 참조)	필수서류	5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부록 참조)	6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안전 인증 추가 ▪ 필수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경영 설문조사 추가 -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추가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KS, 형식승인서, ISO9001																																											
3	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	필수서류(부록 참조)																																										
4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 ISO45001																																											
3	기술제휴계약서 및 A/S 제공계약서																																											
4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부록 참조)	필수서류																																										
5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부록 참조)																																											
6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2. 판매업체의 등록신청 서류</p> <p>가. 제조사가 국내업체인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175 1174 1133 1561"> <thead> <tr> <th>번호</th> <th>제출 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인감증명서</td> <td rowspan="3">해당하는 경우만 제출</td> </tr> <tr> <td>2</td> <td>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td> </tr> <tr> <td>3</td> <td>KS, 형식승인서, ISO9001</td> </tr> <tr> <td>4</td> <td>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td> <td rowspan="3">필수서류 (공증후 제출)</td> </tr> <tr> <td>5</td> <td>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td> </tr> <tr> <td>6</td> <td>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td> </tr> </tbody> </table>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인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3	KS, 형식승인서, ISO9001	4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필수서류 (공증후 제출)	5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6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2. 판매업체의 등록신청 서류</p> <p>가. 제조사가 국내업체인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1254 1174 2211 1750"> <thead> <tr> <th>번호</th> <th>제출 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인감증명서</td> <td rowspan="3">해당하는 경우만 제출</td> </tr> <tr> <td>2</td> <td>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td> </tr> <tr> <td>3</td> <td>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ISO45001</td> </tr> <tr> <td>4</td> <td>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td> <td>필수서류 (공증후 제출)</td> </tr> <tr> <td>5</td> <td>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td> <td rowspan="3">필수서류(부록 참조)</td> </tr> <tr> <td>6</td> <td>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td> </tr> <tr> <td>7</td> <td>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td> </tr> <tr> <td>8</td> <td>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td> <td rowspan="2">필수서류</td> </tr> <tr> <td>9</td> <td>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td> </tr> </tbody> </table>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인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3	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 ISO45001	4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필수서류 (공증후 제출)	5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필수서류(부록 참조)	6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7	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8	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필수서류	9	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안전 인증 추가 * 경과조치 : '23.01.01 신규 및 갱신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 필수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경영 설문조사 추가 -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추가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인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3	KS, 형식승인서, ISO9001																																											
4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필수서류 (공증후 제출)																																										
5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6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인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2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또는 신고서																																											
3	KS, 형식승인서, ISO9001, ISO14001 , ISO45001																																											
4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필수서류 (공증후 제출)																																										
5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필수서류(부록 참조)																																										
6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7	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8	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필수서류																																										
9	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별표2 현장심사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2. 판매업체의 등록신청 서류</p> <p>나. 제조사가 국외업체인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한국</th> <th>일본</th> <th>중국</th> <th>독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자등록 증명원</td> <td>이력사항 전부증명서</td> <td>세무등기증</td> <td rowspan="4">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td> </tr> <tr> <td>2</td> <td>공장등록 증명서</td> <td>특정공장 변경신청서</td> <td>국유토지 사용증</td> </tr> <tr> <td>3</td> <td>법인등기부 등본</td> <td>이력사항 전부증명서</td> <td>기업법인 영업집조</td> </tr> <tr> <td>4</td> <td>인감증명서</td> <td>인감증명서</td> <td>-</td> </tr> <tr> <td>5</td> <td colspan="4">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td> </tr> <tr> <td>6</td> <td colspan="4">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td> </tr> <tr> <td>7</td> <td colspan="4">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td> </tr> </tbody> </table>		번호	한국	일본	중국	독일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세무등기증	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	2	공장등록 증명서	특정공장 변경신청서	국유토지 사용증	3	법인등기부 등본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기업법인 영업집조	4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5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6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				7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				<p>[별표 1] 등록신청 서류</p> <p>2. 판매업체의 등록신청 서류</p> <p>나. 제조사가 국외업체인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한국</th> <th>일본</th> <th>중국</th> <th>독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자등록 증명원</td> <td>이력사항 전부증명서</td> <td>세무등기증</td> <td rowspan="4">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td> </tr> <tr> <td>2</td> <td>공장등록 증명서</td> <td>특정공장 변경신청서</td> <td>국유토지 사용증</td> </tr> <tr> <td>3</td> <td>법인등기부 등본</td> <td>이력사항 전부증명서</td> <td>기업법인 영업집조</td> </tr> <tr> <td>4</td> <td>인감증명서</td> <td>인감증명서</td> <td>-</td> </tr> <tr> <td>5</td> <td colspan="4">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td> </tr> <tr> <td>6</td> <td colspan="4">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td> </tr> <tr> <td>7</td> <td colspan="4">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td> </tr> <tr> <td>8</td> <td colspan="4">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td> </tr> <tr> <td>9</td> <td colspan="4">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td> </tr> <tr> <td>10</td> <td colspan="4">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별표2 현장심사 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td> </tr> </tbody> </table>		번호	한국	일본	중국	독일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세무등기증	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	2	공장등록 증명서	특정공장 변경신청서	국유토지 사용증	3	법인등기부 등본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기업법인 영업집조	4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5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6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				7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				8	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				9	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				10	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별표2 현장심사 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경영 설문조사 추가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 추가 																																																																																																																													
번호	한국	일본	중국	독일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세무등기증	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																																																																																																																																																																																																																						
2	공장등록 증명서	특정공장 변경신청서	국유토지 사용증																																																																																																																																																																																																																							
3	법인등기부 등본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기업법인 영업집조																																																																																																																																																																																																																							
4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5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6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																																																																																																																																																																																																																									
7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																																																																																																																																																																																																																									
번호	한국	일본	중국	독일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세무등기증	지방법원 상업등기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역할) * 납세자등록증명서 (보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는 별도 없음																																																																																																																																																																																																																						
2	공장등록 증명서	특정공장 변경신청서	국유토지 사용증																																																																																																																																																																																																																							
3	법인등기부 등본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기업법인 영업집조																																																																																																																																																																																																																							
4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5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 및 A/S제공계약서																																																																																																																																																																																																																									
6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부록 참조)																																																																																																																																																																																																																									
7	판매업체의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준수 서약서”(필수서류, 부록 참조)																																																																																																																																																																																																																									
8	제조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																																																																																																																																																																																																																									
9	판매업체의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부록 참조)																																																																																																																																																																																																																									
10	제조업체의 “필수 품질교육과정 이수증”(별표2 현장심사 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 참조)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1.3 기술분야 평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No.</th> <th>자재 그룹명</th> <th>비고</th> <th>구분</th> <th>No.</th> <th>자재 그룹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5">배 전</td> <td>1</td> <td>변압기</td> <td>41p</td> <td rowspan="15">송 변 전</td> <td>1</td> <td>전력용 변압기</td> <td>73p</td> </tr> <tr> <td>2</td> <td>개폐기, 차단기</td> <td>43p</td> <td>2</td> <td>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td> <td>75p</td> </tr> <tr> <td>3</td> <td>배전 가공 절연전선</td> <td>46p</td> <td>3</td> <td>리액터류</td> <td>77p</td> </tr> <tr> <td>4</td> <td>지중배전 케이블</td> <td>48p</td> <td>4</td> <td>개폐장치</td> <td>79p</td> </tr> <tr> <td>5</td> <td>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td> <td>50p</td> <td>5</td> <td>시스템 분야</td> <td>81p</td> </tr> <tr> <td>6</td> <td>애자류</td> <td>52p</td> <td>6</td> <td>철탑 및 관형 지지물</td> <td>85p</td> </tr> <tr> <td>7</td> <td>COS류</td> <td>54p</td> <td>7</td> <td>가공전선류</td> <td>89p</td> </tr> <tr> <td>8</td> <td>피뢰기류</td> <td>56p</td> <td>8</td> <td>애자류</td> <td>91p</td> </tr> <tr> <td>9</td> <td>전력량계</td> <td>58p</td> <td>9</td> <td>금구류</td> <td>93p</td> </tr> <tr> <td>10</td> <td>전자식 타임스위치</td> <td>60p</td> <td>10</td> <td>항공장애등</td> <td>95p</td> </tr> <tr> <td>11</td> <td>전자접촉기</td> <td>62p</td> <td>11</td> <td>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td> <td>97p</td> </tr> <tr> <td>12</td> <td>전선퓨즈</td> <td>64p</td> <td>12</td> <td>절연통 보호장치류</td> <td>99p</td> </tr> <tr> <td>13</td> <td>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td> <td>66p</td> <td>13</td> <td>보호계전기</td> <td>101p</td> </tr> <tr> <td>14</td> <td>지하매설식 기기함</td> <td>68p</td> <td>14</td> <td>보호배전반</td> <td>102p</td> </tr> <tr> <td>15</td> <td>전기자동차 충전장치</td> <td>70p</td> <td>15</td> <td>고장기록장치반류</td> <td>103p</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6</td> <td>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td> <td>104p</td> </tr> </tbody> </table>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배 전	1	변압기	41p	송 변 전	1	전력용 변압기	73p	2	개폐기, 차단기	43p	2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	75p	3	배전 가공 절연전선	46p	3	리액터류	77p	4	지중배전 케이블	48p	4	개폐장치	79p	5	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	50p	5	시스템 분야	81p	6	애자류	52p	6	철탑 및 관형 지지물	85p	7	COS류	54p	7	가공전선류	89p	8	피뢰기류	56p	8	애자류	91p	9	전력량계	58p	9	금구류	93p	10	전자식 타임스위치	60p	10	항공장애등	95p	11	전자접촉기	62p	11	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	97p	12	전선퓨즈	64p	12	절연통 보호장치류	99p	13	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	66p	13	보호계전기	101p	14	지하매설식 기기함	68p	14	보호배전반	102p	1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70p	15	고장기록장치반류	103p					16	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	104p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1.3 기술분야 평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No.</th> <th>자재 그룹명</th> <th>비고</th> <th>구분</th> <th>No.</th> <th>자재 그룹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5">배 전</td> <td>1</td> <td>변압기</td> <td>41p</td> <td rowspan="15">송 변 전</td> <td>1</td> <td>전력용 변압기</td> <td>73p</td> </tr> <tr> <td>2</td> <td>개폐기, 차단기</td> <td>43p</td> <td>2</td> <td>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td> <td>75p</td> </tr> <tr> <td>3</td> <td>배전 가공 절연전선</td> <td>46p</td> <td>3</td> <td>리액터류</td> <td>77p</td> </tr> <tr> <td>4</td> <td>지중배전 케이블</td> <td>48p</td> <td>4</td> <td>개폐장치</td> <td>79p</td> </tr> <tr> <td>5</td> <td>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td> <td>50p</td> <td>5</td> <td>시스템 분야</td> <td>81p</td> </tr> <tr> <td>6</td> <td>배전용 애자류</td> <td>52p</td> <td>6</td> <td>철탑 및 관형 지지물</td> <td>85p</td> </tr> <tr> <td>7</td> <td>COS류</td> <td>54p</td> <td>7</td> <td>가공전선류</td> <td>89p</td> </tr> <tr> <td>8</td> <td>배전용 피뢰기류</td> <td>56p</td> <td>8</td> <td>송변전용 애자류</td> <td>91p</td> </tr> <tr> <td>9</td> <td>전력량계</td> <td>58p</td> <td>9</td> <td>금구류</td> <td>93p</td> </tr> <tr> <td>10</td> <td>전자식 타임스위치</td> <td>60p</td> <td>10</td> <td>항공장애등</td> <td>95p</td> </tr> <tr> <td>11</td> <td>전자접촉기</td> <td>62p</td> <td>11</td> <td>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td> <td>97p</td> </tr> <tr> <td>12</td> <td>전선퓨즈</td> <td>64p</td> <td>12</td> <td>절연통 보호장치류</td> <td>99p</td> </tr> <tr> <td>13</td> <td>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td> <td>66p</td> <td>13</td> <td>보호계전기</td> <td>101p</td> </tr> <tr> <td>14</td> <td>지하매설식 기기함</td> <td>68p</td> <td>14</td> <td>보호배전반</td> <td>102p</td> </tr> <tr> <td>15</td> <td>전기자동차 충전장치</td> <td>70p</td> <td>15</td> <td>고장기록장치반류</td> <td>103p</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6</td> <td>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td> <td>104p</td> </tr> </tbody> </table>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배 전	1	변압기	41p	송 변 전	1	전력용 변압기	73p	2	개폐기, 차단기	43p	2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	75p	3	배전 가공 절연전선	46p	3	리액터류	77p	4	지중배전 케이블	48p	4	개폐장치	79p	5	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	50p	5	시스템 분야	81p	6	배전용 애자류	52p	6	철탑 및 관형 지지물	85p	7	COS류	54p	7	가공전선류	89p	8	배전용 피뢰기류	56p	8	송변전용 애자류	91p	9	전력량계	58p	9	금구류	93p	10	전자식 타임스위치	60p	10	항공장애등	95p	11	전자접촉기	62p	11	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	97p	12	전선퓨즈	64p	12	절연통 보호장치류	99p	13	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	66p	13	보호계전기	101p	14	지하매설식 기기함	68p	14	보호배전반	102p	1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70p	15	고장기록장치반류	103p					16	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	1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명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자류 구분(배전/송변전) 피뢰기류 구분(배전/송변전)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배 전	1	변압기	41p	송 변 전	1	전력용 변압기	73p																																																																																																																																																																																																																			
	2	개폐기, 차단기	43p		2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	75p																																																																																																																																																																																																																			
	3	배전 가공 절연전선	46p		3	리액터류	77p																																																																																																																																																																																																																			
	4	지중배전 케이블	48p		4	개폐장치	79p																																																																																																																																																																																																																			
	5	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	50p		5	시스템 분야	81p																																																																																																																																																																																																																			
	6	애자류	52p		6	철탑 및 관형 지지물	85p																																																																																																																																																																																																																			
	7	COS류	54p		7	가공전선류	89p																																																																																																																																																																																																																			
	8	피뢰기류	56p		8	애자류	91p																																																																																																																																																																																																																			
	9	전력량계	58p		9	금구류	93p																																																																																																																																																																																																																			
	10	전자식 타임스위치	60p		10	항공장애등	95p																																																																																																																																																																																																																			
	11	전자접촉기	62p		11	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	97p																																																																																																																																																																																																																			
	12	전선퓨즈	64p		12	절연통 보호장치류	99p																																																																																																																																																																																																																			
	13	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	66p		13	보호계전기	101p																																																																																																																																																																																																																			
	14	지하매설식 기기함	68p		14	보호배전반	102p																																																																																																																																																																																																																			
	1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70p		15	고장기록장치반류	103p																																																																																																																																																																																																																			
				16	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	104p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구분	No.	자재 그룹명	비고																																																																																																																																																																																																																			
배 전	1	변압기	41p	송 변 전	1	전력용 변압기	73p																																																																																																																																																																																																																			
	2	개폐기, 차단기	43p		2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	75p																																																																																																																																																																																																																			
	3	배전 가공 절연전선	46p		3	리액터류	77p																																																																																																																																																																																																																			
	4	지중배전 케이블	48p		4	개폐장치	79p																																																																																																																																																																																																																			
	5	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	50p		5	시스템 분야	81p																																																																																																																																																																																																																			
	6	배전용 애자류	52p		6	철탑 및 관형 지지물	85p																																																																																																																																																																																																																			
	7	COS류	54p		7	가공전선류	89p																																																																																																																																																																																																																			
	8	배전용 피뢰기류	56p		8	송변전용 애자류	91p																																																																																																																																																																																																																			
	9	전력량계	58p		9	금구류	93p																																																																																																																																																																																																																			
	10	전자식 타임스위치	60p		10	항공장애등	95p																																																																																																																																																																																																																			
	11	전자접촉기	62p		11	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	97p																																																																																																																																																																																																																			
	12	전선퓨즈	64p		12	절연통 보호장치류	99p																																																																																																																																																																																																																			
	13	배전자능회용 리튬이차전지	66p		13	보호계전기	101p																																																																																																																																																																																																																			
	14	지하매설식 기기함	68p		14	보호배전반	102p																																																																																																																																																																																																																			
	1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70p		15	고장기록장치반류	103p																																																																																																																																																																																																																			
				16	변전소 비상전원 시스템(특이온축전)	104p																																																																																																																																																																																																																				

현행							개정							개정사유												
				17	폐퇴기류	106p					17	<u>송변전용</u> 폐퇴기류	106p													
			ICT	1	광케이블류	108p				ICT	1	광케이블류	108p													
				2	ICT장치류	111p					2	ICT장치류	111p													
[별표 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input type="checkbox"/> 설계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판정</th> <th>판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적</td> <td>○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td> </tr> <tr> <td>부</td> <td>○ '적'의 판정기준 미달</td> </tr> </tbody> </table> <p>※ 인정 자격증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p>							판정	판정기준	적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별표 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input type="checkbox"/> 설계인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판정</th> <th>판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적</td> <td>○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td> </tr> <tr> <td>부</td> <td>○ '적'의 판정기준 미달</td> </tr> </tbody> </table> <p>* 인정 자격증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해당분야 : 해당품목 또는 동등이상의 유사품목(자재그룹)</p>							판정	판정기준	적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 해당분야 설명 오류 수정 ※ 자재그룹별 일괄 적용
판정	판정기준																									
적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판정	판정기준																									
적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n명이상 보유 또는 ○ 연구/설계분야 근무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n년이상 n명이상 보유 (경력 n년이상인 경우는 n명이상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별표 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애자류 2. 적용 구매규격 : 배전 애자류 전 구매규격 3. (생략) 4. 제조분야 ※ 필수 제조설비 - (폴리머) 사출기, 압착기 - (자기재) 불밀, 진동체, 탈철 시설, 진공토련기, 애자 자동성형기, 건조실, 자동시유기, 샌드 도포기, 터널/샤틀 소성로, (외주가능) 금구 가공설비, 금구 주조설비, 도금설비							[별표 2]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u>배전용</u> 애자류 2. 적용 구매규격 : 배전 애자류 전 구매규격 3. (생략) 4. 제조분야 ※ 필수 제조설비 - (폴리머) 사출기, 압착기 -(자기재) 불밀, 진동체, 탈철 시설, 진공토련기, 애자 자동성형기, 건조실, 자동시유기, 샌드 도포기, 터널/샤틀 소성로, (외주가능) 금구 가공설비, 금구 주조설비, 도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명 명확화 ▪ 자기재 애자류 제외 												

현행	개정	개정사유																																																																																																							
<p>5. 시험 및 검수분야 필수 검수시험 설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험설비</th> <th colspan="2">현수애자</th> <th colspan="2">라인포스트애자</th> </tr> <tr> <th>폴리머</th> <th>자기재</th> <th>폴리머</th> <th>자기재</th> </tr> </thead> <tbody> <tr><td>내전압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뇌충격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인장파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굽힘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냉열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고주파섬락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흡습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과전파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d></td></tr> <tr><td>도금시험</td><td>○</td><td>○</td><td>○</td><td>○</td></tr> <tr><td>비틀림하중시험</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시험설비	현수애자		라인포스트애자		폴리머	자기재	폴리머	자기재	내전압시험기	○	○	○	○	뇌충격시험기	○	○	○	○	인장파괴하중시험기	○		○	○	굽힘내하중시험기			○		냉열시험기		○		○	고주파섬락시험기		○			흡습시험기		○		○	과전파괴하중시험기		○			도금시험	○	○	○	○	비틀림하중시험	○				<p>5. 시험 및 검수분야 필수 검수시험 설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험설비</th> <th>폴리머 현수애자</th> <th>폴리머 라인포스트애자</th> <th>폴리머 <u>내오손 결합애자</u></th> </tr> </thead> <tbody> <tr><td>내전압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뇌충격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인장파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굽힘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냉열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고주파섬락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흡습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과전파괴하중시험기</td><td></td><td></td><td></td></tr> <tr><td>도금시험</td><td>○</td><td>○</td><td>○</td></tr> <tr><td>비틀림하중시험</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시험설비	폴리머 현수애자	폴리머 라인포스트애자	폴리머 <u>내오손 결합애자</u>	내전압시험기	○	○	○	뇌충격시험기	○	○	○	인장파괴하중시험기	○	○	○	굽힘내하중시험기		○	○	냉열시험기				고주파섬락시험기				흡습시험기				과전파괴하중시험기				도금시험	○	○	○	비틀림하중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머 내오손 결합애자 검수시험설비 추가
시험설비		현수애자		라인포스트애자																																																																																																					
	폴리머	자기재	폴리머	자기재																																																																																																					
내전압시험기	○	○	○	○																																																																																																					
뇌충격시험기	○	○	○	○																																																																																																					
인장파괴하중시험기	○		○	○																																																																																																					
굽힘내하중시험기			○																																																																																																						
냉열시험기		○		○																																																																																																					
고주파섬락시험기		○																																																																																																							
흡습시험기		○		○																																																																																																					
과전파괴하중시험기		○																																																																																																							
도금시험	○	○	○	○																																																																																																					
비틀림하중시험	○																																																																																																								
시험설비	폴리머 현수애자	폴리머 라인포스트애자	폴리머 <u>내오손 결합애자</u>																																																																																																						
	내전압시험기	○	○	○																																																																																																					
뇌충격시험기	○	○	○																																																																																																						
인장파괴하중시험기	○	○	○																																																																																																						
굽힘내하중시험기		○	○																																																																																																						
냉열시험기																																																																																																									
고주파섬락시험기																																																																																																									
흡습시험기																																																																																																									
과전파괴하중시험기																																																																																																									
도금시험	○	○	○																																																																																																						
비틀림하중시험	○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철탑 및 관형지지물 2. 적용 구매규격 : 송전용 철탑 및 관형지지물 전 구매규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입찰참가 허용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산형강</td> <td>2등급</td> <td>2도체이하 산형강철탑</td> </tr> <tr> <td>1등급</td> <td>4도체이상 산형강철탑</td> </tr> <tr> <td rowspan="2">강관</td> <td>2등급</td> <td>4도체이하 강관철탑</td> </tr> <tr> <td>1등급</td> <td>6도체이상 강관철탑</td> </tr> <tr> <td>관형지지물</td> <td>-</td> <td>4도체이하 관형지지물</td> </tr> </tbody> </table> <p>※ 주) ① 각 분야 1등급 등록시에는 해당분야 2등급에도 등록된 것으로 인정 함 ② 산형강 철탑 : 주주재가 산형강으로 이루어진 철탑 구조물 ③ 강관 철탑 : 주주재가 강관으로 이루어진 철탑 구조물 ④ 관형지지물 : I형 또는 H형으로 된 파이프(원형, 각형) 형태의 구조물</p>	구분	등급	입찰참가 허용품목	산형강	2등급	2도체이하 산형강철탑	1등급	4도체이상 산형강철탑	강관	2등급	4도체이하 강관철탑	1등급	6도체이상 강관철탑	관형지지물	-	4도체이하 관형지지물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철탑 및 관형지지물 2. 적용 구매규격 : 송전용 철탑 및 관형지지물 전 구매규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입찰참가 허용품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산형강</td> <td>2등급</td> <td>2도체이하 산형강철탑</td> </tr> <tr> <td>1등급</td> <td>4도체이상 산형강철탑</td> </tr> <tr> <td rowspan="2">강관</td> <td>2등급</td> <td>4도체이하 강관철탑</td> </tr> <tr> <td>1등급</td> <td>6도체이상 강관철탑</td> </tr> <tr> <td>관형지지물</td> <td>-</td> <td>4도체이하 관형지지물</td> </tr> <tr> <td>HVDC 철탑</td> <td>-</td> <td>HVDC 2Bi-Pole 6도체 강관철탑</td> </tr> </tbody> </table> <p>※ 주) ① 각 분야 1등급 등록시에는 해당분야 2등급에도 등록된 것으로 인정 함 ② 산형강 철탑 : 주주재가 산형강으로 이루어진 철탑 구조물 ③ 강관 철탑 : 주주재가 강관으로 이루어진 철탑 구조물 ④ 관형지지물 : I형 또는 H형으로 된 파이프(원형, 각형) 형태의 구조물 ⑤ HVDC철탑 : 주주재가 강관으로 이루어진 HVDC용 철탑 구조물</p>	구분	등급	입찰참가 허용품목	산형강	2등급	2도체이하 산형강철탑	1등급	4도체이상 산형강철탑	강관	2등급	4도체이하 강관철탑	1등급	6도체이상 강관철탑	관형지지물	-	4도체이하 관형지지물	HVDC 철탑	-	HVDC 2Bi-Pole 6도체 강관철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HVDC 철탑 추가 																																																																				
구분	등급	입찰참가 허용품목																																																																																																							
산형강	2등급	2도체이하 산형강철탑																																																																																																							
	1등급	4도체이상 산형강철탑																																																																																																							
강관	2등급	4도체이하 강관철탑																																																																																																							
	1등급	6도체이상 강관철탑																																																																																																							
관형지지물	-	4도체이하 관형지지물																																																																																																							
구분	등급	입찰참가 허용품목																																																																																																							
산형강	2등급	2도체이하 산형강철탑																																																																																																							
	1등급	4도체이상 산형강철탑																																																																																																							
강관	2등급	4도체이하 강관철탑																																																																																																							
	1등급	6도체이상 강관철탑																																																																																																							
관형지지물	-	4도체이하 관형지지물																																																																																																							
HVDC 철탑	-	HVDC 2Bi-Pole 6도체 강관철탑																																																																																																							

현행						개정						개정사유
3.설계분야 <input type="checkbox"/> 설계능력						3.설계분야 <input type="checkbox"/> 설계능력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관형주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4도체이하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관형주 HVDC 철탑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도체이하 2Bi-Pole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6도체)					
적	○ 해당 품목에 대한 대한 자체 또는 외부 지원설계 경험, 실적을 보유하거나 유사품목에 대한 설계 경험 및 실적 보유					적	○ 해당 품목에 대한 대한 자체 또는 외부 지원설계 경험, 실적을 보유하거나 유사품목에 대한 설계 경험 및 실적 보유					
부	○ “적” 판정기준 미달					부	○ “적” 판정기준 미달					
<input type="checkbox"/> 설계인력						<input type="checkbox"/> 설계인력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관형주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도체이하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관형주 HVDC 철탑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도체이하 2Bi-Pole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6도체)					
적	○ 설계도 및 제작도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3년 이상 3명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5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7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 보유					적	○ 설계도 및 제작도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3년 이상 3명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5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 보유 ○ 구조설계분야 경력자 - 7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4. 제조분야 <input type="checkbox"/> 제조능력						4. 제조분야 <input type="checkbox"/> 제조능력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관형주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도체이하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평가	판정기준 산형강 강관 HVDC 철탑 관형주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Bi-Pole 4도체이하 (2도체이하) (4도체이상) (4도체이하) (6도체이상) (6도체)					
적	○ 가공송전 철탑가공 경력 1년 이상 2명 이상 보유 ○ 용접기능사 2급 경력 7년 이상자 3명 이상 보유 ○ 용접검사 경력 7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 가공송전 철탑 가공경력 1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 용접기능사 2급 경력 7년 이상자 2명 이상 보유 ○ 용접검사 경력 7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적	○ 가공송전 철탑가공 경력 1년 이상 2명 이상 보유 ○ 용접기능사 2급 경력 7년 이상자 3명 이상 보유 ○ 용접검사 경력 7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 가공송전 철탑 가공경력 1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 용접기능사 2급 경력 7년 이상자 2명 이상 보유 ○ 용접검사 경력 7년 이상자 1명 이상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	-----	---------

제조설비

평가	관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이하
적	○ 기준설비 100% 보유				
부	○ '적'의 보유기준 미달				

※ 기준설비

구 분	설 비	설비보유기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 이하
대 지	가조립장 및 야적장	4,300㎡ 소유 또는 임차	7,600㎡ 좌동	10,000㎡ 좌동	13,200㎡ 좌동	4,300㎡ 좌동
가공설비	Cutting M/C	보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Band Sawing M/C	보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Drilling M/C	보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Punching M/C	보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Pipe Cutter φ427-φ965.2	-	-	보유	보유	보유
도금설비	도금로 (1식)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기록장치부)	보유 또는 외주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용접설비	Positioner	-	-	보유	보유	보유
	Turning Roller Welder (3Ton이상, 3Ton미만 각1대)	-	-	보유	보유	보유
	자동용접기 : CNC	-	-	보유	보유	보유
	반자동용접기 : CO2	-	-	보유	보유	보유
환경시설	공해방지 시설	보유 또는 외주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폐수처리 시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외주시 계약관련 서류 확인

제조설비

평가	관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HVDC 철탑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이하	2Bi-Pole (6도체)
적	○ 기준설비 100% 보유					
부	○ '적'의 보유기준 미달					

※ 기준설비

구 분	설 비	설비보유기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HVDC 철탑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 이하	2Bi-Pole (6도체)
대 지	가조립장 및 야적장	4,300㎡ 소유 또는 임차	7,600㎡ 소유 또는 임차	10,000㎡ 소유 또는 임차	13,200㎡ 소유 또는 임차	4,300㎡ 소유 또는 임차	13,200㎡ 소유 또는 임차
가공설비	Cutting M/C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Band Sawing M/C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Drilling M/C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Punching M/C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Pipe Cutter φ427-φ965.2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도금설비	도금로 (1식)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기록장치부)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용접설비	Positioner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Turning Roller Welder (3Ton이상, 3Ton미만 각1대)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자동용접기 : CNC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반자동용접기 : CO2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환경시설	공해방지 시설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폐수처리 시설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보유 또는 외주

※ 외주시 계약관련 서류 확인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	-----	---------

5. 시험 및 검수분야

시험능력

평가	판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 이하
적	○ 기준 시험설비 100% 보유				
부	○ '적'의 보유기준 미달				

※ 기준 시험설비

구 분	시 험 설 비	설 비 보 유 기 준				관형주	
		산 형 강		강 관			4도체이하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1	인장시험기	보유				보유 또는 외주	
2	초음파탐상시험기	-	-	보유			
3	자분탐상시험기	-	-	보유			
4	하중시험설비	보유 또는 외주					

시험자료

평가	판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이하
적	○ 해당품목의 시험기준 및 지침 보유				
부	○ '적'의 판정기준 미달				

5. 시험 및 검수분야

시험능력

평가	판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HVDC 철 탐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이하	2Bi-Pole (6도체이상)
적	○ 기준설비 100% 보유					
부	○ '적'의 보유기준 미달					

※ 기준 시험설비

구 분	시 험 설 비	설 비 보 유 기 준					관형주	
		산 형 강		강 관		HVDC 철 탐		4도체이하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2Bi-Pole (6도체)		
1	인장시험기	보유					보유 또는 외주	
2	초음파탐상시험기	-	-	보유				
3	자분탐상시험기	-	-	보유				
4	하중시험설비	보유 또는 외주						

시험자료

평가	판 정 기 준					
	산 형 강		강 관		관형주	HVDC 철 탐
	2등급 (2도체이하)	1등급 (4도체이상)	2등급 (4도체이하)	1등급 (6도체이상)	4도체이하	2Bi-Pole (6도체)
적	○ 해당품목의 시험기준 및 지침 보유					
부	○ '적'의 보유기준 미달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삭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	-----	---------

[별표 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애자류
4. 제조분야
 ※ 필수 제조설비

NO	규격 1, 2		규격 3, 4	
	설비명	보유기준	주요 설비명	보유기준
1	불 밀	보유	금구가공설비	외주가능
2	진동체, 탈철 시설	보유	금구구조설비	
3	Filter Press	보유	도금설비	
4	진공토련기	보유	FRP ROD 가공설비	
5	애자 자동성형기	보유	폴리머 배합설비	
6	건조실	보유	외피재 성형설비	
7	자동시유기	보유	조립(금구접속)설비	보유
8	샌드 도포기	보유		
9	터널/샤틀 소성로	보유		
10	금구 가공설비	외주가능		
11	금구 구조설비			
12	도금 설비			

※ 외주시 계약관련 서류 확인

5. 시험 및 검수분야
 ※ 시험설비

NO	규격 1, 2		규격 3, 4	
	설비명	보유기준	주요 설비명	보유기준
1	타격내하중 시험기	보유	비틀림내하중 시험기	보유
2	흡습시험기	보유	염색용액침투 시험장비	보유
3	상용주파유중파괴전압 시험기	보유	인장파괴하중 시험기	보유
4	냉열 시험기	보유	접착력 시험기	보유
5	도금 시험기	보유	도금 시험기	보유
6	과전파괴하중 시험기	보유	스프리트핀 시험기*	보유 *규격4 제외
7	열충격 시험기 (유리애자)	보유	인장내하중 시험기	보유
8	스프리트핀만곡경도 시험기(초고압용)	보유	기밀성 시험기	보유
9	-	-	음향방출 측정 장치	보유

[별표 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1. 그룹명 : 송변전용 애자류
4. 제조분야
 ※ 필수 제조설비

NO	규격 1, 2		규격 2		규격 3, 4	
	<u>자기 애자</u>		<u>유리 애자</u>		<u>폴리머 애자</u>	
	설비명	보유기준	설비명	보유기준	주요 설비명	보유기준
1	불 밀	보유	<u>저장 사일로</u>	<u>보유</u>	금구가공설비	외주가능
2	진동체, 탈철 시설	보유	<u>유리성분 혼합설비</u>	<u>보유</u>	금구구조설비	
3	Filter Press	보유	<u>컨베이어</u>	<u>보유</u>	도금설비	
4	진공토련기	보유	<u>용광로</u>	<u>보유</u>	FRP ROD 가공설비	
5	애자 자동성형기	보유	<u>애자 자동 성형기</u>	<u>보유</u>	폴리머 배합설비	
6	건조실	보유	<u>애자 자동 강화기</u>	<u>보유</u>	외피재 성형설비	
7	자동시유기	보유	<u>열 충격장치</u>	<u>보유</u>	조립(금구접속)설비	보유
8	샌드 도포기	보유				
9	터널/샤틀 소성로	보유				
10	금구 가공설비	외주가능				
11	금구 구조설비					
12	도금 설비					

5. 시험 및 검수분야
 ※ 시험설비

NO	규격 1, 2		규격 3, 4	
	설비명	보유기준	주요 설비명	보유기준
1	타격내하중 시험기	보유	비틀림내하중 시험기	보유
2	흡습시험기 (<u>유리애자 제외</u>)	보유	염색용액침투 시험장비	보유
3	상용주파유중파괴전압 시험기	보유	인장파괴하중 시험기	보유
4	냉열 시험기	보유	접착력 시험기	보유
5	도금 시험기	보유	도금 시험기	보유
6	과전파괴하중 시험기	보유	스프리트핀 시험기*	보유 *규격4 제외
7	열충격 시험기 (유리애자)	보유	인장내하중 시험기	보유
8	스프리트핀만곡경도 시험기(초고압용)	보유	기밀성 시험기	보유
9	-	-	음향방출 측정 장치	보유

- 그룹명 명확화
- 유리아자 추가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p> <p>1. 그룹명 : 항공장애등</p> <p>4. 제조분야</p> <p>※ 필수 제조설비</p> <table border="1" data-bbox="142 523 1155 720"> <thead> <tr> <th>NO</th> <th>구분</th> <th>설비명</th> <th>보유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작업장</td> <td>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td> <td>보유</td> </tr> <tr> <td>2</td> <td>조립</td> <td>조립설비</td> <td>보유</td> </tr> <tr> <td>3</td> <td>납땀</td> <td>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td> <td>보유</td> </tr> </tbody> </table>	NO	구분	설비명	보유기준	1	작업장	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	보유	2	조립	조립설비	보유	3	납땀	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	보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p> <p>1. 그룹명 : 항공장애등</p> <p>4. 제조분야</p> <p>※ 필수 제조설비</p> <table border="1" data-bbox="1196 523 2208 720"> <thead> <tr> <th>NO</th> <th>구분</th> <th>설비명</th> <th>보유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작업장</td> <td>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td> <td>보유</td> </tr> <tr> <td>2</td> <td>조립</td> <td>조립설비</td> <td>보유</td> </tr> <tr> <td>3</td> <td>납땀</td> <td>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td> <td>보유</td> </tr> </tbody> </table>	NO	구분	설비명	보유기준	1	작업장	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	보유	2	조립	조립설비	보유	3	납땀	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	보유	<p>▪ 필수 제조설비 제외</p>				
NO	구분	설비명	보유기준																																			
1	작업장	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	보유																																			
2	조립	조립설비	보유																																			
3	납땀	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	보유																																			
NO	구분	설비명	보유기준																																			
1	작업장	크린룸 또는 암실(3×5m이상)	보유																																			
2	조립	조립설비	보유																																			
3	납땀	Soldering Machine(PCB 납땀기)	보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2.2 품질분야 점검표</p> <p>품질분야 점검표(적부제)</p> <table border="1" data-bbox="175 942 1122 1744">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적</th> <th>부</th> </tr> </thead> <tbody> <tr> <td>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적	부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p> <p>2.2 품질분야 점검표</p> <p>품질분야 점검표(적부제)</p> <table border="1" data-bbox="1229 942 2175 1744">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적</th> <th>부</th> </tr> </thead> <tbody> <tr> <td>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 * <u>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u></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적	부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 * <u>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국외社 교육실적 인정항목 명확화</p>
평가항목	적	부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	적	부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가 품질관리를 하는가? ○ 평가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본(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 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 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판정 * <u>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필수 시험설비의 검교정은 유효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유자격자를 통해 내부품질심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실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등록된 핵심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등록서 상 납품업체간 계약서 확인 ** 필요시, 등록된 핵심부품 실사용 여부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p> <p style="text-align: center;"><u>품질분야 점검표</u></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 및 요구사항</th> <th>평가기준</th> <th>배점</th> <th>평가결과 및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품질경영시스템(5점)</td> </tr> <tr> <td colspan="4">1.1 일반 요구사항(2점)</td> </tr> <tr> <td>○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td> <td>- ㉠항 만족</td> <td>2</td> <td></td> </tr> <tr> <td>㉡ 품질시스템 인증</td> <td>- ㉠항 불만족, ㉢항 만족</td> <td>1</td> <td></td> </tr> <tr> <td>㉣ 매뉴얼 수립, 시행</td> <td>- 2개항 불만족</td> <td>0</td> <td></td> </tr> <tr> <td colspan="4">1.2 문서화 요구사항(3점)</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및 요구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및 의견	1. 품질경영시스템(5점)				1.1 일반 요구사항(2점)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	- ㉠항 만족	2		㉡ 품질시스템 인증	- ㉠항 불만족, ㉢항 만족	1		㉣ 매뉴얼 수립, 시행	- 2개항 불만족	0		1.2 문서화 요구사항(3점)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2 품질분야 점검표</p> <p style="text-align: center;"><u>품질분야 점검표(점수제)</u></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 및 요구사항</th> <th>평가기준</th> <th>배점</th> <th>평가결과 및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품질경영시스템(5점)</td> </tr> <tr> <td colspan="4">1.1 일반 요구사항(2점)</td> </tr> <tr> <td>○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td> <td>- ㉠항 만족</td> <td>2</td> <td></td> </tr> <tr> <td>㉡ 품질시스템 인증</td> <td>- ㉠항 불만족, ㉢항 만족</td> <td>1</td> <td></td> </tr> <tr> <td>㉣ 매뉴얼 수립, 시행</td> <td>- 2개항 불만족</td> <td>0</td> <td></td> </tr> <tr> <td colspan="4">1.2 문서화 요구사항(3점)</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및 요구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및 의견	1. 품질경영시스템(5점)				1.1 일반 요구사항(2점)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	- ㉠항 만족	2		㉡ 품질시스템 인증	- ㉠항 불만족, ㉢항 만족	1		㉣ 매뉴얼 수립, 시행	- 2개항 불만족	0		1.2 문서화 요구사항(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적부제, 점수제 점검표 구분 																										
심사항목 및 요구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및 의견																																																																																	
1. 품질경영시스템(5점)																																																																																				
1.1 일반 요구사항(2점)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	- ㉠항 만족	2																																																																																		
㉡ 품질시스템 인증	- ㉠항 불만족, ㉢항 만족	1																																																																																		
㉣ 매뉴얼 수립, 시행	- 2개항 불만족	0																																																																																		
1.2 문서화 요구사항(3점)																																																																																				
심사항목 및 요구사항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및 의견																																																																																	
1. 품질경영시스템(5점)																																																																																				
1.1 일반 요구사항(2점)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	- ㉠항 만족	2																																																																																		
㉡ 품질시스템 인증	- ㉠항 불만족, ㉢항 만족	1																																																																																		
㉣ 매뉴얼 수립, 시행	- 2개항 불만족	0																																																																																		
1.2 문서화 요구사항(3점)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3 품질분야 평가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u>품질분야 평가기준</u></p> <table border="1"> <tbody> <tr> <td>산 출 식</td> <td>○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td> </tr> <tr> <td>품질등급 가중치 기준</td> <td>○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td> </tr> <tr> <td></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E</th> <th>G</th> <th>N</th> <th>L</th> <th>P</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산 출 식	○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품질등급 가중치 기준	○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E</th> <th>G</th> <th>N</th> <th>L</th> <th>P</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분 야	E	G	N	L	P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3 품질분야 평가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u>품질분야 평가기준</u></p> <table border="1"> <tbody> <tr> <td>산 출 식</td> <td>○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td> </tr> <tr> <td>품질등급 가중치 기준</td> <td>○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td> </tr> <tr> <td></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산 출 식	○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품질등급 가중치 기준	○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분 야	S	A	B	C	D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평가등급 명칭 변경 - Excellent, Good, Normal, Limited, Poor → S, A, B, C, D
산 출 식	○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품질등급 가중치 기준	○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E</th> <th>G</th> <th>N</th> <th>L</th> <th>P</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분 야	E	G	N	L	P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분 야	E		G	N	L	P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산 출 식	○ 당해연도 등급가중치 × 20점 + 전년도 등급가중치 × 10점 * 단, 당해연도 평가 전 : 전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 평가실적이 1년만 있는 경우 : 해당년도 등급가중치 × 30점																																																																																			
품질등급 가중치 기준	○ 자재그룹별* 평균등급 산정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 2」 1.3 준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 야</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r> <th colspan="5">입찰제한 無</th> </tr> <tr> <th></th> <th>A</th> <th>B</th> <th colspan="3">C</th> </tr> </thead> <tbody> <tr> <td>배 전</td> <td>100%</td> <td>85%</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송변전</td> <td colspan="2">90%</td> <td>70%</td> <td>55%</td> <td>40%</td> </tr> <tr> <td>ICT</td> <td colspan="2">90%</td> <td>70%</td> <td colspan="2">45%</td> </tr> </tbody> </table>	분 야	S	A	B	C	D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분 야	S		A	B	C	D																																																																														
	입찰제한 無																																																																																			
	A	B	C																																																																																	
배 전	100%	85%	70%	55%	40%																																																																															
송변전	90%		70%	55%	40%																																																																															
ICT	90%		70%	45%																																																																																
<p>※ 평가 예시</p> <p>예1) 업체의 품질평가가 작년 Normal, 금년 Poor이며 평가표에 의한 점수가 75점(100점 만점)인 경우 - 75점×70% + (20점×40% + 10점×70%) = 66.5점</p> <p>예2) 업체의 품질평가가 작년 입찰제한 3회이며, 금년에는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평가표에 의한 점수가 72점인 경우 - 72점×70% + 30점×55% = 66.9점</p>	<p>※ 평가 예시</p> <p>예1) 업체의 품질평가가 작년 B등급, 금년 D등급이며 평가표에 의한 점수가 75점(100점 만점)인 경우 - 75점×70% + (20점×40% + 10점×70%) = 66.5점</p> <p>예2) 업체의 품질평가가 작년 입찰제한 3회이며, 금년에는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평가표에 의한 점수가 72점인 경우 - 72점×70% + 30점×55% = 66.9점</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 품질분야 2.4 송변전분야 세부 현장심사 품목</p> <table border="1" data-bbox="186 413 1138 904"> <thead> <tr> <th>분야</th> <th>세부 품목</th> </tr> </thead> <tbody> <tr> <td>변전</td> <td>* 154kV 이상 전력용변압기 및 리액터류 * 154kV 이상 보호배전반류 * 25.8kV 이상 개폐장치(GIS) 및 차단기류 * 25.8kV 이상 지능형병렬커패시터(ISC)</td> </tr> <tr> <td>송전</td> <td>* 154kV 이상 전력케이블(광복합포함) 및 접속함류 * 154kV 이상 애자(폴리머포함)류 * 154kV 이상 철탑(관형지지물, 강관포함)류</td> </tr> <tr> <td>기타</td> <td>* 신규 지정 신뢰품목 * 반복 고장 발생품목</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 품목	변전	* 154kV 이상 전력용변압기 및 리액터류 * 154kV 이상 보호배전반류 * 25.8kV 이상 개폐장치(GIS) 및 차단기류 * 25.8kV 이상 지능형병렬커패시터(ISC)	송전	* 154kV 이상 전력케이블(광복합포함) 및 접속함류 * 154kV 이상 애자(폴리머포함)류 * 154kV 이상 철탑(관형지지물, 강관포함)류	기타	* 신규 지정 신뢰품목 * 반복 고장 발생품목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2. 품질분야 < 삭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내용 삭제
분야	세부 품목									
변전	* 154kV 이상 전력용변압기 및 리액터류 * 154kV 이상 보호배전반류 * 25.8kV 이상 개폐장치(GIS) 및 차단기류 * 25.8kV 이상 지능형병렬커패시터(ISC)									
송전	* 154kV 이상 전력케이블(광복합포함) 및 접속함류 * 154kV 이상 애자(폴리머포함)류 * 154kV 이상 철탑(관형지지물, 강관포함)류									
기타	* 신규 지정 신뢰품목 * 반복 고장 발생품목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3. 국외 경영분야 3.2 국외 경영분야 점검표 국외 경영분야 점검표</p> <p>1. 경영상태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가. 기업신용평가서 (중략) ※ <u>일반경영분야</u> 종합평가</p>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3. 국외 경영분야 3.2 국외 경영분야 점검표 국외 경영분야 점검표</p> <p>1. 경영상태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가. 기업신용평가서 (중략) ※ <u>일반경영분야</u> 종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3. 국외 경영분야 3.3 경영분야 평가기준 <u>일반경영분야</u> 평가기준</p> <p>1. 경영상태 가. 기업신용평가서 (중략)</p>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3. 국외 경영분야 3.3 <u>국외</u> 경영분야 평가기준 <u>일반경영분야</u> 평가기준</p> <p>1. 경영상태 가. 기업신용평가서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 신설 ></p>	<p>[별표 2] 현장심사 기준 <u>4. 비대면 현장심사</u></p> <p style="text-align: center;"><u>비대면 현장심사 기준</u></p> <p><u>1. 비대면 현장심사 신청</u> 가. 신청자격 : 서류심사 결과가 '적격'인 자 나. 신청조건 ① 「예비심사」 신청 공문 및 서약서 제출(부록7 참조) ② 「예비심사」 시행 후 현장심사 불가요인 해소될 경우 「최종심사」 신청 ③ 「최종심사」 미이행 또는 심사결과가 최종 '부적격'인 경우 「예비심사」 적격 조건으로 진행한 (인정)시험성적서 불인정 및 유자격 불인정 처리 다. 신청자료</p> <table border="1" data-bbox="1201 942 2162 129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공 증</td> <td>·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 서류의 원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한 후 제출</td> </tr> <tr> <td>서약서</td> <td>· 제조업체, 판매업체</td> </tr> <tr> <td>품질분야</td> <td>· 유효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1) 및 품질분야 제출서류(부록8)</td> </tr> <tr> <td>기술분야</td> <td>· 기술분야 제출서류(부록8) 및 설비사진(GPS정보, 촬영일자 포함)</td> </tr> </tbody> </table> <p><u>2. 비대면 현장심사 「예비심사」</u> 가. 증빙서류 및 설비 사진(GPS정보, 촬영일자 포함) 검토 나. 화상플랫폼 활용 한전-신청자 비대면 심사</p> <p><u>3. 비대면 현장심사 「최종심사」</u> 가. 신청자격 : 「예비심사」 신청 및 시행결과가 '적격'인 자 나. 신청시기 : 현장심사 불가요인 해소 후 다. 신청조건 : 비대면 현장심사 시행일인 해소</p>	구분	내용	공 증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 서류의 원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한 후 제출	서약서	· 제조업체, 판매업체	품질분야	· 유효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1) 및 품질분야 제출서류(부록8)	기술분야	· 기술분야 제출서류(부록8) 및 설비사진(GPS정보, 촬영일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현장심사 기준 추가
구분	내용											
공 증	·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 서류의 원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한 후 제출											
서약서	· 제조업체, 판매업체											
품질분야	· 유효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9001) 및 품질분야 제출서류(부록8)											
기술분야	· 기술분야 제출서류(부록8) 및 설비사진(GPS정보, 촬영일자 포함)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부록] 서식</p> <p>< 신설 ></p>	<p>[부록] 서식</p> <p>7. 비대면 현장심사 조건 준수 서약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비대면 현장심사 조건 준수 서약서</p> <p>우리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공급 유자격자로 등록 신청하는 (제조/판매)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의 '비대면 현장심사 조건'을 준수하겠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사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제13조 이하의 1년간 동일품목 재신청 제한, 「예비심사」 적격 조건으로 진행한 인정시험성적서 불인정, 등록업무 종결 및 우리회사가 등록절차에 투입한 비용 등 향후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신청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대면 현장심사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류심사 결과가 '적격'인 경우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최종심사」 최종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조/판매) 업체에게 있다. 2. 「예비심사」 신청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며 한전의 추가 자료요청 시 1개월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 업무를 종결한다. 3. 한전의 「예비심사」 적격 후, 지침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한전 피시험품 승인 및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성적서를 등록할 수 있다. 4. 「최종심사」는 비대면 현장심사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신청한다. 5. 「최종심사」의 미이행 또는 심사결과가 최종 '부적격'인 경우 「예비심사」 적격 조건으로 진행한 (인정)시험성적서 불인정 처리 및 등록심사 업무를 종결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약자 : ○○○회사 대표자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심사 가승인 조건 준수 서약서 추가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	-----	---------

8. 「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

8.1 기술분야

품 목 군 (자재그룹) : _____ 품 목 명 : _____ 점검일자 : _____
 업 체 명 (담 당 자) : _____ 성 명 : _____ 연락처 : _____

조항	점검항목*	제출서류
1	설계분야	
1.1	설계능력	
	○ 구매규격 인용기준 보유 유무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 구매규격 인용기준(제조부분) 보유 증빙 * 시험 및 통신부분 제외 * 보유현황목록 1부, 보유확인가능사진 1부
1.2	설계인력	
	○ 설계인력의 보유, 설계경험 및 자격증 유무 - 해당품목 설계경험 및 근무경력 - 설계관련 기술자격 보유 여부 ※ 유사품목 생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확인가능할 경우)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품목별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 설계 조직도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 설계 인력 근무경력 및 보유 자격증 각 1부 (필요시 학력증명서 포함)
2	제조분야	
2.1	제조능력	
	○ 제조인력의 보유, 근무경험 및 자격증 유무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 해당품목 근무경력 및 기술수준 - 기술자격 보유 여부 ※ 유사품목 생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확인가능할 경우)	품목별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 제조관리 및 생산관련 조직도 1부 - 관련인원 재직증명서 1부 - 제조인력 근무경력 및 보유자격증 1부 (필요시 학력 증명서 포함) - 제조인력의 해당품목 또는 유사품목 제조경험 증빙자료 1부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별표2] 1.2 기술분야 점검표현장심사기준의 점검항목 인용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별표2] 1.3,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 참조

현행	개정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조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설비</td> <td></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조설비 보유상태 - 해당품목 제조에 관련된 제조설비 보유 또는 임대 여부 확인 - 보유 제조설비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 필수 제조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설비 기록 대장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제조설비 관리 대장 스캔본 1부 (유지보수, 점검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험 및 검사분야</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험능력</td> <td></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검수시험 항목 시험을 위한 설비 보유 또는 임차 여부 - 외관, 구조검사 등 관능시험 항목은 제외 ○ 필수 검수시험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설비 기록 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검교정결과 기록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적 : 시험설비 100% 보유 부 : 시험설비 100%미만 보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험자료</td> <td></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시험기준 및 지침 보유 여부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한 관련 시험기준 및 지침 1부 </td> </tr> </tbody> </table>	조항	점검항목	제출서류	2.2	제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조설비 보유상태 - 해당품목 제조에 관련된 제조설비 보유 또는 임대 여부 확인 - 보유 제조설비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 필수 제조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설비 기록 대장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제조설비 관리 대장 스캔본 1부 (유지보수, 점검 등) 	3	시험 및 검사분야		3.1	시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검수시험 항목 시험을 위한 설비 보유 또는 임차 여부 - 외관, 구조검사 등 관능시험 항목은 제외 ○ 필수 검수시험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설비 기록 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검교정결과 기록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적 : 시험설비 100% 보유 부 : 시험설비 100%미만 보유 	3.2	시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시험기준 및 지침 보유 여부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한 관련 시험기준 및 지침 1부 	
조항	점검항목	제출서류																								
2.2	제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조설비 보유상태 - 해당품목 제조에 관련된 제조설비 보유 또는 임대 여부 확인 - 보유 제조설비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 필수 제조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설비 기록 대장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제조설비 관리 대장 스캔본 1부 (유지보수, 점검 등) 																								
3	시험 및 검사분야																									
3.1	시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검수시험 항목 시험을 위한 설비 보유 또는 임차 여부 - 외관, 구조검사 등 관능시험 항목은 제외 ○ 필수 검수시험설비 일치여부 - SRM 등록내역과 실제 보유장비의 일련번호 등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설비 기록 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임대시 임대 계약서 - 검교정결과 기록대장 전체 스캔본 1부 ☞ 적 : 시험설비 100% 보유 부 : 시험설비 100%미만 보유 																								
3.2	시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품목 시험기준 및 지침 보유 여부 ☞ 품목별 세부기준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한 관련 시험기준 및 지침 1부 																								
	<p>※ 전체 제출서류는 파일형태(PDF) 송부 가능</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8.2 품질분야</p> <p>품 목 군 (자재그룹) : 품 목 명 : 점검일자 : 업 체 명 (담 당 자) : 성 명 : 연락처 :</p> <table border="1" data-bbox="1210 452 2214 1286"> <thead> <tr> <th data-bbox="1210 452 1926 517">점검항목</th> <th data-bbox="1926 452 2214 517">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10 517 1926 900">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의 품질관리 ○ 평가 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분(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 시 적합판정 * 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 </td> <td data-bbox="1926 517 2214 900">교육 수료증 각 1부</td> </tr> <tr> <td data-bbox="1210 900 1926 962">2. 필수 시험설비 검교정 유효성</td> <td data-bbox="1926 900 2214 962">설비별 검교정 성적서 1부</td> </tr> <tr> <td data-bbox="1210 962 1926 1070">3. 유자격자를 통한 내부품질심사 이행</td> <td data-bbox="1926 962 2214 1070">내부품질심사 서류 (계획서, 결과보고서) 1부</td> </tr> <tr> <td data-bbox="1210 1070 1926 1178">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 수립 및 이행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내역 샘플</td> <td data-bbox="1926 1070 2214 1178">로트관리계획서, 로트관리내역 샘플 1부</td> </tr> <tr> <td data-bbox="1210 1178 1926 1286">5. 등록된 핵심부품 사용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업체간 계약서</td> <td data-bbox="1926 1178 2214 1286">계약서 또는 거래명세표 1부</td> </tr> </tbody> </table> <p>※ 모든 문서는 작성일자, 작성자 및 승인자의 결재가 있어야 인정</p>	점검항목	제출서류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의 품질관리 ○ 평가 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분(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 시 적합판정 * 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	교육 수료증 각 1부	2. 필수 시험설비 검교정 유효성	설비별 검교정 성적서 1부	3. 유자격자를 통한 내부품질심사 이행	내부품질심사 서류 (계획서, 결과보고서) 1부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 수립 및 이행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내역 샘플	로트관리계획서, 로트관리내역 샘플 1부	5. 등록된 핵심부품 사용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업체간 계약서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표 1부	
점검항목	제출서류													
1. 필수 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품질담당자의 품질관리 ○ 평가 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교육이수 여부 평가 (1)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 인력(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인정과정 : 품질검사 실무기분(이러닝) (2)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각 1명 이상) - 인정과정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 이내) 또는 에너지공기업 기자재 공급자 과정(4년이내) * 교육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 단, 미이수 사유가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 시 적합판정 * 국외업체의 경우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2명 이상)	교육 수료증 각 1부													
2. 필수 시험설비 검교정 유효성	설비별 검교정 성적서 1부													
3. 유자격자를 통한 내부품질심사 이행	내부품질심사 서류 (계획서, 결과보고서) 1부													
4. 한전납품분 로트(LOT) 관리 수립 및 이행 * 신규등록은 로트관리계획서 또는 타 품목 로트관리내역 샘플	로트관리계획서, 로트관리내역 샘플 1부													
5. 등록된 핵심부품 사용 * 신규등록은 핵심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업체간 계약서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표 1부													
<p>[부록]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부록] 서식</p> <p>9. 표준 제작공정도 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제작공정도 양식 추가 												

현행	개정	개정사유																																													
	<table border="1" data-bbox="1201 247 2206 846"> <thead> <tr> <th>생산공정</th> <th>세부공정</th> <th>공정내용</th> <th>제조설비</th> <th>필수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제품 설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재 입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가공/조립</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검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data-bbox="1201 865 2206 1166"> 1) 생산공정은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 작업순서는 제품설계부터 실제 최종완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생산공정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다. 3) 공정내용은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내용을 말한다. 4) 제조설비는 직접 보유하여 제조공정과 공정내용에 실제 투입하는 제조설비(검사설비 포함)을 말한다. 5) 필수여부는 제조, 검사설비의 필수설비 여부를 체크한다. 6) 외주여부는 제조공정에 따른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를 명시한다. </p>	생산공정	세부공정	공정내용	제조설비	필수여부	비고	제품 설계						자재 입고						가공/조립											검사																
생산공정	세부공정	공정내용	제조설비	필수여부	비고																																										
제품 설계																																															
자재 입고																																															
가공/조립																																															
검사																																															
<p data-bbox="131 1244 340 1290">[부록] 서식</p> <p data-bbox="559 1302 724 1348">< 신설 ></p>	<p data-bbox="1201 1244 1410 1290">[부록] 서식</p> <p data-bbox="1201 1360 1904 1406">10.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 양식</p> <p data-bbox="1503 1437 1904 1483">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p> <hr data-bbox="1399 1483 2014 1491"/> <div data-bbox="1207 1561 2217 170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data-bbox="1218 1572 2206 1688">본 설문지는 한국전력공사 공급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식별하기 위한 자가진단서로, 공급업체의 ESG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p> </div>	<ul data-bbox="2261 1302 2601 1340"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제작공정도 양식 추가 																																													

현행	개정	개정사유																																											
	<p>1. 기업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196 340 2233 436"> <tr> <td data-bbox="1196 340 1402 388">업체명</td> <td data-bbox="1402 340 1794 388"></td> <td data-bbox="1794 340 1983 388">주요업종</td> <td data-bbox="1983 340 2233 388"></td> </tr> <tr> <td data-bbox="1196 388 1402 436">주소</td> <td colspan="3" data-bbox="1402 388 2233 436"></td> </tr> </table> <p>2. 아래 평가 항목들에 대한 귀사의 준수여부를 ○ 표시하여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196 552 2233 1750"> <thead> <tr> <th data-bbox="1196 552 1306 600">대분류</th> <th data-bbox="1306 552 1457 600">소분류</th> <th data-bbox="1457 552 2074 600">평가항목</th> <th data-bbox="2074 552 2129 600">예</th> <th data-bbox="2129 552 2233 600">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6 600 1306 1190" rowspan="4">윤리</td> <td data-bbox="1306 600 1457 745">반부패</td> <td data-bbox="1457 600 2074 745">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의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306 745 1457 919">공정거래</td> <td data-bbox="1457 745 2074 919">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담합행위, 부당한 거래제한 및 거래조건의 변경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306 919 1457 1016">신원보호</td> <td data-bbox="1457 919 2074 1016">익명 신고 채널과 같이 비밀을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가 보복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306 1016 1457 1190">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td> <td data-bbox="1457 1016 2074 1190">한국전력공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공유 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196 1190 1306 1750" rowspan="4">인권·노동</td> <td data-bbox="1306 1190 1457 1518">노동관계법 준수</td> <td data-bbox="1457 1190 2074 1518">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 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규에 의해 근로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활동 및 결정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306 1518 1457 1624">인권보호정책</td> <td data-bbox="1457 1518 2074 1624">아동·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1306 1624 1457 1750">차별금지</td> <td data-bbox="1457 1624 2074 1750">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친분, 신체장애, 인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의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업체명		주요업종		주소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예	아니오	윤리	반부패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의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담합행위, 부당한 거래제한 및 거래조건의 변경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보호	익명 신고 채널과 같이 비밀을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가 보복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	한국전력공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공유 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	노동관계법 준수	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 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규에 의해 근로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활동 및 결정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인권보호정책	아동·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차별금지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친분, 신체장애, 인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의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업체명		주요업종																																											
주소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예	아니오																																									
윤리	반부패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의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또는 입찰공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공동·담합행위, 부당한 거래제한 및 거래조건의 변경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보호	익명 신고 채널과 같이 비밀을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가 보복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	한국전력공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공유 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	노동관계법 준수	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 수당,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규에 의해 근로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활동 및 결정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인권보호정책	아동·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차별금지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친분, 신체장애, 인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임직원의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	-----	---------

대 분류	소 분류	평 가 항 목	예	아니오
환경	환경법규의 준수	<p>환경·품질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며, 자원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물질 배출 및 관리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p> <p>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p>		
	환경영향물질 관리	<p>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저장, 운반, 사용, 폐기하고 있습니다</p> <p>재해 및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시 환경관리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있습니다 (유출사례가 없을 시 '예' 선택)</p>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에너지 절약	<p>온실가스, 중금속,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영향물질 배출 및 전력·연료 소비 절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제조·유통·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공정 개선, 원료대체,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p>		
안전보건	산업안전	<p>작업환경 정기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p> <p>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산재·질병예방	<p>적절한 치료 및 원인 제거 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체계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p>		

3. 기타 건의사항

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